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
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0년 9월 7일

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 분야	임용 등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정 부서	담당직무 내용
전문위원	임기제 지방행정 주사 (6급)	1명	2년	동작구의회 (전문위원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조례안, 예산안, 청원 등 안건 검토보고·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· 조사·연구 및 제공·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·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
민원상담 (비서)	시간선택제 임기제 '마급'	1명	2년	동작구의회 (3층 또는 4층 비서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민원 안내 및 상담· 부속실 업무 등

※ 임용예정일 : 2020. 10. 20.(화)

2. 응시 자격 요건

가.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연령
 - 전문위원 : 20세 이상 (2000.12.31. 이전 출생자)
 - 민원상담(비서) : 18세 이상 (2002.12.31. 이전 출생자)

나.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시자격요건
전문위원	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 : 법률자문, 법무행정, 공공행정 등 ○ 관련분야 학위 : 행정학과, 법학과, 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반 행정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○ 관련분야 경력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소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·조사·분석·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로 경력 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
민원상담 (비서)	채용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 : 행정·사무·상담·서비스분야 등 ○ 우대사항 :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사무자동화 자격증 등 보유자 우대

3. 보수 수준

구 분	근무시간	보수수준
전문위원	주 40시간 (09:00~18:00, 1일 8시간, 주5일 근무)	○봉급 :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 (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50,584천원 기준) ○수당 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○기타 : 4대보험 가입
민원상담 (비서)	주 35시간 (09:00 ~17:00. 1일 7시간, 주5일 근무)	○봉급 :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근무시간 비례지급 (일반직 9급 3호봉 기준) ○수당 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의거 근무 시간 비례 지급 ○기타 : 4대보험 가입

4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0.9.18.(금)~9.22.(화) <3일간 09:00~18:00, 근무시간에 한함>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본인 및 가족)
- 접수처 :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(의회2층)
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※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※ 가족방문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및 신분증 지참

나.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	면접시험		면접 합격자 발표
	일시	장소	
2020. 9. 28.(월) 예정	2020. 10. 8.(목)예정	의회사무국	2020. 10. 12.(월) 예정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- 1차시험(서류전형) : 동작구 및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 - 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시행
- 2차시험(면접시험)
 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가
 -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동작구 및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(근무예정부서)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.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-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 - 응시수수료 : 동작구 수입증지 7,000원(전문위원), 5,000원(민원상담)
 - 판매장소 :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구입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
 - 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4호 서식) 1부
-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(별지5호 서식) 1부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를 반드시 첨부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나. 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서식 제6호) 1부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(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, 상훈 등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6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,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. (※ 방문수령만 가능,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, **응시수수료 반환 불가**)
 - ※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의회(☎ 820-17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(별도 첨부).